

消防檢査規則 運用指針 (2)

(前月 계속)

내 무 부

(59) 증발성액체 소화설비의 하룬1301용으로서 전구역 방출방식의 경우 하나의 분사노즐(분사각360도형(오버헤드형) 및 분사각 180도형(측벽형))이 담당할 수 있는 방출개스의 유효확산 거리는 수평거리 10미터 이하이고 수직거리 15미터 이하(수직거리 10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방호구역에서 분사노즐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이어야 하며 그 구역내에 장애물(방호대상물 포함)이 있을때라도 전구역에 걸쳐 법정 방출시간내에 소화약제(개스)의 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물과 노즐간의 거리나 장애물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1 (가) (6) (7) (외관)

(60) 증발성 액체 설비의 배관 방식, 구경 및 길이는 방호대상별로 1개만의 분사노즐을 사용하여 방출시키는 경우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분사노즐을 사용할 경우에는 노즐간의 거리(전역 방출방식의 경우), 토나먼트 배관방식, 노즐을 장착하는 배관의 선택 조건등의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공학계산에 따라 결정된 배관방식, 구경 및 길이 이어야 한다.

17-1-1 (가) (1) (2) (4) (표사항) (5) (단서 사항) (7) (8) (9) (11) (외관)

17-1-2 (가) (1) (2) (5) (단서사항) (8) (10) (외관)

(61) 피난기구설비에 있어서 옥외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한 경우에 동 기구의 설치 제외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치한다.

3 (가) (4) (외관)

(62) 배연설비에 있어서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라도 주송배풍기의 성능이 송배풍에 충분한 경우에는 급기 및 배연 타워로부터 30미터마다 부스팅휨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2-2 (가) (4) (외관)

3-4 (가) (6) (외관)

(63) 본 검사규칙의 배연설비 점검기준은 소방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 대상물 이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연설비 전체”

(64) 연결송수관설비에 중간가압 송수장치가 설치된(지상 30미터 이상의 방수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을 경우이든가 아니든가에 상관없이) 경우 동장치의 설치 높이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물탱크를 동장치에 대한 물올림 탱크로 사용할 경우에는 송수입상관을 물탱크의 급수관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압 송수장치의 흡입구 배관과 통합 배관하며 동입상관과 흡입구 배관과의 연결점의 인입측(입상관측)에 적응한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증압펌프의 흡입기에 펌프기동용 스위치(100리터들이 챔버는 생략될 수도 있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시한방식의 경우에는 소방차 호스연결 송수구측에 기동스위치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1-2 (가) (3) (외관)

6-2 (가) (1) (2) (외관)

(65)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및 호스 격납함의 설치 장소는 특별피난계단전실, 비상승강기, 전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실내에 설치하되 동실이 유효한 방화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대상구역이 유효한 자동소화설비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실에 인접한 그구역내의 장소로서 소방대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나 동실의 내부의 벽등 적정한 부분에 당해 방수구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유효한 표지(안내판, 도면등)를 갖추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2-1 (가) (1) (외관)

3-1 (가) (2) (외관)

(66) 연결송수관 설비에 있어 중간가압 송수장치가 설치될 경우 동장치는 제22항의 지침에 따른 장소로서 방화 구조를 가진 별도 전용실 또는 방재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및 옥상직하층에도 전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치할 수 있다.

6-1 (가) (2) (3) (외관)

(67)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 장치가 담당하는 최고위 방수구까지의 높이는 동 장치의 펌프 토출구로부터 80미터이하(하나의 입상관으로서 가능)이어야 하며, 8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수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방수구의 인입측에 유효한 감압장

치를 설치함으로써 120미터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결 송수구로부터 소방차가 담당하는 최고위 방수구까지의 높이는 지하층을 제외한 높이 11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6-1 (가) (1) (4) (외관)
- 1-2 (가) (3) (60미터 사항) (외관)
- 1-2 (가) (4) (60미터 사항) (외관)

(68) 연결송수구간의 간격이 소방대의 신속한 호스접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수구간의 간격은 40센티미터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크라설비 10-1-2 (가) (외관)
- 물분무소화설비 2-7-1-2 (가) (외관)
- 연결송수관설비 1-1 (가) (4) (외관)
- 연결살수설비 1-1 (가) (4) (외관)

(69)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공칭구경이 15밀리미터인 헤드를 스프링크라 설비검사기준 3-2-10 (가) (1)의 (C) (외관)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토나멘트배관 방식은 생략될 수 있고 (토나멘트 방식이 아닌 경우라도 2개의 헤드 가지관 방식은 불가) 헤드의 설치개수도 20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20개를 초과할 경우의 배관은 수리역학적 계산에 따라 압력균배 방식(토나멘트 방식이 아닐수도 있음)으로 하여야 한다.

- 3-5 (가) (4) (5) (외관)

(70)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의 기동 스위치는 복귀형 누름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점점 용량은 한 국공업표준 규격품으로서 적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옥내소화전 설비 1-4-2 (가) (1) (외관)
- 옥외소화전 설비 1-2-5 (가) (2) (외관)

(71) 감지기 회로용 이외의 모든 소방시설용 전선에 있어서, 전원으로부터 가압송수장치의 전동기, 모든 배연설비의 송배풍기용 전동기에 대한 전원 공급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설치장소의 주위온도가 섭씨 60도 미만일때 600볼트 내열성 비닐절연 전선(섭씨 90도, 30분, HIV)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모든 대상물의 감지기의 회로용 전선은 동 온도조건하에서 600볼트 비닐절연 전선(IV)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한 동력용 전원 공급선이라도 동 전선이 전용의 방화구획내에 설치되거나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된 경우에는 600볼트 내열성 비닐절연 전선(섭씨 90도, 30분 HIV)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소방 기기내의 배선 및 동 기기가 적정한 불연성 구조물내(판앨등)에 내장된 내부의 배선은 600볼트 비닐절연 전선(IV)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3-4	(가) (5) (외관)
	4-5	(가) (7) (외관)
옥외소화전설비	1-2-4	(가) (3) (외관)
	1-2-6	(가) (3) (외관)
	5-5-2	(가) (5)
스프링크라설비	2-5-2	(가) (5) (외관)
	5-4-1	(가) (5) (외관)
	5-5-1	(가) (4) (외관)
	6-3-1	(가) (5) (외관)
	8-1-4	(가) (4)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2-5-2	(가) (5) (외관)
	6-1	(가) (1) (외관)
포말소화설비	2-5-2	(가) (5) (외관)
	8-13-5	(가) (3) (외관)
	9-1-3	(가) (3)
	9-2-2-2	(가) (9) (외관)
	9-3-2-2	(가) (6) (외관)
	9-6	(가) (2) (외관)
불연성가스소화설비	6-1-1	(가) (2) (외관)
	18-3	(가) (외관)
증발성액체소화설비	6-1-1	(가) (2) (외관)
	19-3	(가) (외관)
분말소화설비	4-6-1-1	(가) (2) (외관)
	7-3	(가) (1) (외관)
자동화재탐지설비	2-4	(가) (3) (외관)
	5-2-2-1	(가) (외관)
	5-2-2-2	(가) (외관)
	5-2-2-3	(가) (외관)
	5-2-2-4	(가) (외관)
	5-2-2-5	(가) (외관)
	5-2-2-6	(가) (외관)
자동화재속보설비	3	(가) (3) (외관)
비상경보기구및설비	1-1-2	(가) (3) (외관)
	1-2-2-5	(가) (3) (외관)
	7	(가) (1) (외관)
배 연 설 비	3-5	(가) (8) (외관)
	5-1-3	(가) (외관)
	5-4	(가) (5) (외관)
	6-7	(가) (2) (외관)
	11	(가) (1) (외관)
	11	(가) (2) (외관)
	11	(가) (4) (외관)
	11	(가) (5) (외관)
비상콘센트 설비	8	(가) (1) (외관)
화기 취급설비	1-2	(가) (12) (외관)
전 기 설 비	1-3-2	(다) (기능)
축전지 설비	8	(가) (2) (기능)
비 상 발 전 설 비	1-8-1	(가) (2)

(72) 다음에 계기한 본 검사규칙의 검사사항은 한국공업표준규격, 공업진흥청 형식승인,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2-1	(가) (4) (외관)
	4-2-2	(가) (5) (외관)
	4-2-2	(나) (다) (라) (기능)
	4-2-3	(가) (2) (3) (외관)
	4-5	(가) (3) (4) (5) (6) (9) (외관)
	4-5	(가) (라) (마) (기능)
	5-2-1	(가) (6)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2-1	(가) (2) (외관)
	5-2-2	(가) (2) (외관)
	5-2-2	(다) (라) (마) (기능)
	5-2-3	(가) (2) (3) (5) (외관)
	5-2-2	(가) (2) (3) (4) (7)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1-2	(가) (4) (외관)
	2-2-1	(가) (2) (외관)
	2-2-2	(나) (1) (기능)
	2-2-2	(다) (기능)
	2-2-3	(가) (1) (3) (외관)
	2-5-2	(가) (1) (2) (3) (4) (8) (외관)
물분무 소화설비	2-2-1	(가) (2) (외관)
	2-2-2	(다) (라) (마) (기능)
	2-2-3	(가) (1) (2) (3) (외관)
	2-5-2	(가) (1) (2) (3) (4) (8) (외관)
포말소화 설비	2-2-1	(가) (3) (외관)
	2-2-2	(다) (라) (마) (기능)
	2-2-3	(가) (1) (2) (3) (외관)
	2-5-2	(가) (1) (2) (3) (4) (8) (외관)
	9-6	(가) (1) (외관)
불연성가스소화설비	6-1-1	(가) (3) (외관)
	17	(가) (4) (외관)
	17	(다) (기능)
	18-4	(가) (외관)
	8-4	(가) (기능)
	18-7	(가) (1) (2) (외관)
증발성액체소화설비	3-1-2-1	(가) (4) (외관)
	18	(가) (4) (외관)
	18	(가) (3) (외관)
	19-2	(가) (4) (외관)
	19-4	(가) (외관)
	19-4	(가) (기능)
	16-6	(가) (외관)

	19-7	(가) (1) (2) (외관)
자동화재탐지 설비	1-5	(가) (1) (2) (외관)
	1-6	(가) (1) (2) (3) (4) (5) (외관)
	2-2	(가) (다) (라) (마) (기능) 및 (외관)
	2-3	(가) (4) (외관)
	4-1	(가) (1) (2) (외관)
	5-1-1	(가) (나) (기능)
	5-1-2	(가) (기능)
	5-1-3	(가) (기능)
	5-1-4	(가) (나) (다) (기능)
	5-1-5	(가) (나) (기능)
전기화재 경보기	1-2-3	(가) (외관)
	2-2	(가) (1) (2) (3) (외관)
	2-4	(가) (기능)
화재속보 설비	3	(가) (4) (외관)
비상 경보기구	1-1-2	(가) (2) (외관)
	7	(가) (2) (외관)
배 연 설 비	11	(가) (3) (6) (외관)
비상콘센트 설비	2	(가) (3) (4) (외관)
	3	(가) (3) (4) (외관)
	6	(가) (기능)
	7	(가) (기능)
	8	(가) (3) (외관)
전기설비 (별 25)	1-1-1 ~ 1-4-13	

(73)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크라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비 (저압용기식)에 있어서 동력의 사용전압은 동력자원부 시책에 따르되 기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정격전압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옥내소화전 설비	4-2-2	(가) (1) (2) (4) (외관)
	4-2-2	(가) (기능)
옥외소화전 설비	5-2-2	(가) (1) (2) (4) (외관)
	5-2-2	(나) (기능)
스프링크라 설비	2-2-2	(가) (2) (3) (5) (외관)
	2-2-2	(나) (기능)
물분무 소화설비	2-2-2	(가) (2) (3) (5) (외관)
	2-2-2	(나) (기능)
포말소화 설비	2-2-2	(가) (1) (2) (4) (외관)
	2-2-2	(나) (기능)
불연성가스소화설비	4-2-1	(가) (2) (외관)

(74)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전동기의 전원공급 회로에 과전류 자동차단장치가 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소화설비의 제어함, 자동화재 탐지설

기비 수신 또는 종합수신기에 각각 과부하 경고 및 전
원 이상의 표시를 하는 구조의 결선은 생략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2-3 (가) (4)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2-3 (가) (4) (외관)

(75)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함에 전
동기기동 확인표시장치가 되어 있을때는 동기동합과 전
동기간의 거리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5 (가) (1)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5-1 (가) (1) (외관)

포말소화 설비 2-5-1 (가) (1)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2-5-1 (가) (1)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2-5-1 (가) (1) (외관)

포말소화 설비 2-5-1 (가) (1) (외관)

(76)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 설비에 있어서 가압송수장
치의 기동함에는 전압, 전류의 동작표시, 고장경보, 제
어이상, 경보오동작 판별장치 및 회로이상 판별기능은
생략할 수 있으며 전동기 전원회로에 과전류 자동차단
장치가 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원이상 경보 기능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4-5 (가) (8) (외관)

옥외소화전 설비 5-5-2 (가) (6)

스프링크라 설비 2-5-2 (가) (6) (7) (외관)

물분무 소화설비 2-5-2 (가) (6) (7) (외관)

포말 소화설비 2-5-2 (가) (6) (7) (외관)

(77)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 설비에 있어서 상용전원으로서 타일반 설비
용 전원과 소방설비용 전원을 분지하여 개폐기를 각각
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용전원압기 또는 수전
반에 인입되기 이전에서 분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5-1-1 (가) (2)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11-1-1 (가) (1) (외관)

물분무 소화설비 7-1-1 (가) (1) (외관)

포말소화 설비 11-1-1 (가) (2) (외관)

(78) 비상전원으로서 소방설비 전용의 축전지 설비를 갖추
고 있을 경우 축전지설비는 동 소방설비에서 신호전달,
경보, 표시 및 직류24볼트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모
든 기기의 회로용만의 전원만으로 할 수도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5-1-2 (가) (1) (외관) (기기용
전원사항)

스프링크라 설비 11-1-2 (가) (1)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7-1-2 (가) (1) (외관) (기기용
전원사항)

포말소화 설비 11-1-2 (가) (1) (외관)

(79)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크라 설비, 물분무소화 설비,
포말소화설비의 축전지 설비에 있어서 동설비의 수신
기 또는 종합수신기에 동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회로, 전압 및 전류계, 자동충전장치, 전원스위치등
이 내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소방설비 전용의 축전
지반 및 분전반은 생략될 수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 5-1-2 (가) (3) (외관)

스프링크라 설비 11-1-2 (가) (2) (외관)

물분무소화 설비 7-1-2 (가) (2) (외관)

포말소화 설비 11-1-2 (가) (2) (외관)

(80) 일반부하용 비상발전 설비가 일반부하용 설비의 최대
소비전력에 소방설비 120% 이상을 가산한 전력 용량을
가지는 경우와 동용량을 갖지 못한 경우라도 화재시 동
전원으로부터 소방설비필요용량의120%만은 필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일반부하전력소비의 일부를 공급 차단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방 설비
전용의 별도 비상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용전원
단전후 20초 이내에 자동으로 비상발전 설비가 가동되
는 구조의 경우 동 발전설비의 출력전압이 정격전압에
도달하는 시간은 가동후 20초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동 출력전압은 적정한 장치(변압기등)를 설치하여 소방
설비의 전력 전압과 동일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 5-2-1 (가) (1) (2) (3) (4) (5)
(외관)

스프링크라설비 11-2-1 (가) (1) (2) (3) (4) (5)
(외관)

물분무소화설비 7-2-1 (가) (1) (2) (3) (4) (5)
(외관)

포말소화 설비 11(-2-1 (가) (1) (2) (3) (4) (5)
(외관)

(81)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 준비작동식 밸브의 밸브감시
함은 동 스프링크라 설비의 수신 및 제어방식이 중앙제
어방식일 경우 다음 사항의 구조 및 기능은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다.

① 자동적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전원의 이상을 감
시하면서 밸브 동작의제어, 지연, 차단, 및 원격조
정이 가능한 구조.

②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오동작 자동판별 장치를 갖추
고 오동작은 밸브의 자동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구
조

③ 회로 이상경보, 전력이상경보, 유수경보, 밸브동작
경보, 개폐밸브 개폐표시, 공조설비 동작기능

스프링크라 설비 6-2-1 (가) (1) (2) (3) (외관)

자동화재탐지설비 5-2-1-11 (가) (외관)

(82) 포말소화 설비의 회로구성에 있어서 수신기(또는 종합 수신기)와의 배선거리와 불연성 개스 소화설비, 증발성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에 있어 배선시설에서의 양접점 연결전선의 배선길이는 당해기기의 정상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로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굵기의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배선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포말소화 설비 9-1-3 (가) (5) (외관)
- 불연성개스소화설비 18-5 (가)
- 증발성액체소화설비 19-5 (가) (외관)
- 분말소화 설비 7-5 (가) (외관)

(83) 종합수신기형 수신기실이 용이하게 소방대가 출입 할 수 있는 출입통로(로비 또는 계단실 포함)가 방화 구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용 직통계단이나 외부로 직통하는 문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1 (가) (3) (외관)

(84) 종합수신기형 수신기실의 설치장소는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에 대한 지침을 준용하되, 별도로 구획된 방으로서 유효한 공조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화설비(고정식설비 또는 이동식 장비)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배연설비는 생략할 수 있으며 사람의 활동과 종합수신기의 정상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면 동장소의 온도는 25도를 초과할 수도

자동화재 탐지시설점검기준 : 1-1 (가) (2) (4) (7) (외관)

(85) 수신기의 관열은 설치장소가 동 수신기의 정상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장이 내습, 방수 구조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1-3 (가) (2)

(86) 종합수신기 또는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소방설비 수신기가 비상발전설비의 가동을 표시하는 구조의 것 일때는 동비상발전설비의발전기제어함이 동 수신기에 동작, 고장, 정지상태를 송출, 표시하는 구조는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비상발전설비 1-3-10 (가) (4) (외관)

(8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회로구성에 있어서 감지기 종별, 용도별, 거실별로 별도회로로 분리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며 각 최후드, 계단실 및 입상덕트에 설치하는 연감지기는 대상물의 전방호구역이 자동화재 탐지설비(동 연감지기 포함)의 작동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난유도의 방향이 설정되는 완전자동 시스템화된 유도설비를 갖추고 동 유도설비의 작동상황에 맞추어 비상방송 설비를 통해 인명의 피난을 적시에 적소로 유

도해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지기마다 개별회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7-1 (가) (1) (3) (외관)

1-7-1 (마) (기능)

배 연 설 비 10-1 (가) (4) (외관)

10-2 (가) (3) (외관)

(88) 자동화재 탐지시설의 경종은 각 지구가 방화구조이고 인접지구로 유효한 음량이 전달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지구별로 음향경보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 탐지시설 점검기준 2-4 (가) (1) (외관)

(89) 병실, 호텔, 또는 여관과 같이 침대가 놓여져 있는 곳과 천정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면적이 13평방미터 미만인 방에 설치하는 연감지기는 환자, 지체부자유자, 정신이상자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주하는곳(일반 소방 대상물이라도 의무실, 환자보호실의 용도에 공하는 방도 포함)에 한하여 설치한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3-3 (가) (1) (외관)

3-4 (가) (4) (외관)

(90) 소방설비용 축전지의 용량은 동 축전지가 담당하는 기기 및 회로의 필요전압을 20분이상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축전지설비 3-2 (가) (기능)

(91) 경사각이 3/10이상의 지붕을 가진 창고등 건축물로서 그 지붕이 불연성 또는 내화성 구조인 경우에는 분포형 열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높이가 8미터 이상인 때는 예외로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3-3 (가) (23) (외관)

(9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가위형 배선방식은 물분무 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불연성 가스소화설비, 증발성 액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가 자동시스템인 경우 동 설비를 연동시키는 감지기 회로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위형 배선이라함은 전선관의 배열모양이 가위형 여부에 상관없이 한 방호구역내의 모든 감지기를 둘 이상의 회로로 구성(하나의 감지기만이 설치될 수 있는 구역인 경우에는 2개의 감지기를 설치하여 각각 별개의 회로로 구성한다)하되 화재시 서로 다른 회로를 가진 인접한 2개이상의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서만 자동 소화설비가 연동하며, 한 회로만이 동작할 때에는 적절한 경보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회로구성을 말한다. 다만, 유리밸브형 정온식 감지기 및 분포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가위형 배선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3-5-1 (가) (3) (외관)

(93) 방진, 방습, 방정전기성 감지기, 방수형 연기감지기, 카메라형 감지기, 유리밸브형 정온식 감지기, 인후라스 코프형 감지기, 인후라스칸형 감지기등은 국내생산이 되어 검정품이 나올때까지 같은 유사한 성능 및 기능을 가진 종류의 검정품 감지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말소화설비 9-1-2-2 (가) (1) (2) (3)
(외관)

불연성가스소화설비 6-1-1 (가) (1) (외관)
6-1-2 (가) (3) (4) (외관)
6-1-4
6-2-1
6-3-1

증발성액체소화설비 6-1-1 (가) (1) (외관)
6-1-2 (가) (2) (3) (외관)
6-1-4
6-2-1
6-3-1

분말소화 설비 4-6-1-1 (가) (1) (외관)
4-6-1-4
4-6-2-1
4-6-3-1

자동화재탐지설비 3-3 (가) (2) (3) (4) (6) (8)
(10) (13) (15) (16) (17) (18)
(19) (22) (외관).

배 연 설 비 1-2-2 (가) (6) (외관)
2-1-3 (가) (9) (10) (외관)
10-1 (가) (1) (2) (3) (외관)
10-2 (가) (3) (외관)

축전지 설비 1-1 (가) (9) (외관)

(94) 축전지 설비의 수납방식중 가설대 설치방식인 경우 충전장치와 인버터(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것)는 같이 수납할 수 있으며 축전지는 충전장치 및 인버터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축전지 설비 2-1 (가) (1) (외관)

(95) 비상발전 설비의 내연기관 및 발전기가 지하실에 설치될 경우등 내연기관 및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에 유효한 자동소화설비가 시설되어 있을 때에는 설치장소 전용의 출구 및 전용 직통계단은 설치 아니할 수 있다.

비상발전설비 1-1 (가) (4) (외관)

(96) 비상발전설비의 축전지 제어함에 자동 충전장치, 전류 및 전압계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제어함에서 종합 수신기에 동작신호, 고장신호를 송출하는 기능은 생략될 수 있다.

1-8-2 (마) (기능)

5. 經 過 措 置

1. 消防檢査規則 施行以前 許可 및 竣工同意 建物適用

가. 公布施行以前(79.4.16)에 許可同意된 建物は 既適用한 規定에 依하여 處理한다.

나. 이미 許可同意된 建築物로서 그 工事中 設計變更, 増築等으로 因하여 消防施設을 増設할 境遇 同 増設部分의 施設工事に 있어서 同檢査 規則이 定하는 基準에 依하되 既存施設과 連結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水原 및 藥劑(물除外) 加圧送水裝置 또는 配管(電氣配管包含)配線等으로서 同既存部分 施設과 連結工事を 할 때 그 規格과 容量이 該當 全体施設(既存部分+ 増設部分)의 正常機能에 支障을 주는 것에 限하여 同 該當 部分을 基準에 맞도록 補完하여야 한다.

公布施行 以前에 法基準에 適合하여 竣工同意된 建物(가項의 許可同意建物로서 1979.4.16 以後 竣工合格된 建物도 包含)은 既 適用基準에 依하여 繼續 維持 管理한다. 다만 同施設을 完全 撤去하고 再 工事を 할때는 同檢査規則이 定하는 基準에 依한다.

行 政 事 項

1. 1979.8.14 以前에 建築許可同意事項도 施工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本 指針에 依할 수 있다.

2. 1979.8.14 以前에 質疑照復된 事項은 本 指針에 依한다.